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관련 인허가 사항
확인 의무 부과 등〉

■ 이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932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관련 인허가 사항 확인 의무 부과	3
2.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13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정현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5. 3. 14.
- (3) 회 부 일 : 2025. 3.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행법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용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Online Interface)에 관한 규제를 도입하였음. 이는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한 전자상거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 건수도 동반 상승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임.

그러나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사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규제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관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관련 정보 확인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관련 인허가 사항 확인 의무 부과

□ 개정안은 ① 통신판매업자가 표시·광고하여야 하는 정보에 통신판매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받은 신고·등록·허가 번호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하 “관계 법령 신고·등록·허가 정보”라 한다)을 추가하고(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②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각각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과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한 관계 법령 신고·등록·허가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며(안 제9조의2제2항, 제20조, 제20조의2제2항), ③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한 신원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3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① (생략)	제9조의2(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에 대하여 <u>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u>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 ----- ----- <u>제13조제1항 각 호</u>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고·등록·허가의 번호와 그 신고·등록을 받은 기관 또는 허가를 한 기관의 이름 등 신고·등록 또는 허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생략)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 ----- ----- ----- -----다음 각 호의 사항----- ----- -----제공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u>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1. <u>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u> 2.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3. 사업 영위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고·등록·허가의 번호와 그 신고·등록을 받은 기관 또는 허가를 한 기관의 이름 등 신고·등록 또는 허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③ (생략)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① (생략) 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④ (생략)	4.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0조제2항 및 제3항----- ----- ----- ----- ----- ----- -----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45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설></u> 2. ~ 7. (생략) ④ ~ ⑧ (생략)	제45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자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u> 2. ~ 7.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광고에 상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번호와 함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¹⁾.

- 1)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개정안 제13조는 이에 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등록·허가 사항도 표시·광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임.

- 개정안에 따른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사업 영위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소비자가 청약 전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무자격자의 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범위와 관련하여, 통신 판매업자가 신원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수단(시정조치, 과징금, 과태료, 벌금)²⁾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능한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제6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

2. 시정조치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4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그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제4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 한편, 현행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①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님을 고지할 의무(제20조제1항), ②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관련한 정보(상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 제공 의무(제20조제2항)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의 연대 배상 책임(제20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부여하고 있고³⁾,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⁴⁾에게는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이라 한다)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번호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⁵⁾⁶⁾

3)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가 이에 해당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9.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와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각각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관계 법령 신고·등록·허가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안 제9조의2 및 제20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사업자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45조)하는 내용으로, 신원정보의 확인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보임.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확인 대상 신원정보>

구분	현 행	개정안
통신판매중개업자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인 경우)	
	-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법 §20②)	(개정안 제20조제2항제1호)

- 5) 제9조의2(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는 포털사이트의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물품 공동구매와 같은 상업적 활동의 증가와 함께 소비자의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포털사이트 등에게 소속 카페·블로그가 이 법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하여 2016년 신설된 조문임.
- 6) 제9조의2(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이라 한다)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권고할 것
 2.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과 소비자 사이에 이 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것
 3.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과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신원 확인 조치를 통하여 얻은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여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2. 공정거래위원회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구분	현행	개정안
	- 전자우편주소(시행령 §25①)	(개정안 제20조제2항제1호)
	- 통신판매업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시행령 §25①)	(개정안 제20조제2항제2호)
	- 사업자등록번호 등(시행령 §25①)	(개정안 제20조제2항제4호) -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 제20조제2항제3호) - 사업 영위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등록·허가의 번호와 그 신고·등록·허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등록·허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 성명·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법 §20②) - 생년월일,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시행령 §25②)	(개정안 제20조제3항)
전자게시 판서비스 제공자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좌동)
		- 통신판매업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등록·허가의 번호와 그 신고·등록·허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등록·허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다만, 다양한 재화, 용역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중개 영역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각각의 신고·등록·허가 정보를 확인하여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령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⁷⁾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신고·허가·등록 사항은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권한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없음.

○ 또한, 현행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감안하여 신고·등록·허가 정보 제공 의무 부여 및 관련 정보 미제공시 제재수단(1천만원 이하 과태료)의 추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화등 판매를 위한 타 법령상 인허가 확인 방법·절차 등은 해당 인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7)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통신판매사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2.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1조, 제21조의4 신설 및 제45조제3항 제1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u>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u>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u> 목적으로 한다. <u><신설></u>	<u>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u> 제1조(목적) ----- ----- ----- -----<u>소비자 등</u>----- ----- -----. <u>제21조의4(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u> ① <u>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1.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재화등을 구</u>

현행	개정안
	<u>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u> 2. <u>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u> 3. <u>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부담하게 떠넘기는 행위</u> 4. <u>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u> 5. <u>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u> 6. <u>온라인 인터페이스의 검색·배열 순위를 조작 또는 변경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u> 7. <u>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특정한 결제방식 사용 여부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u> 8. <u>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계약하지 아니하고 판매촉진행사에 사용되는 비용 등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강제로</u>

현행	개정안
	<u>부담시키는 행위</u> 9. <u>부당하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다른 통신판매중개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u> ② <u>제1항 각 호에 따른 불공정 거래행위의 세부 유형 또는 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③ <u>제1항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u> 1. <u>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구조 및 현황</u> 2. <u>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한 전자상거래의 이용 형태, 특성 및 빈도</u> 3. <u>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사업능력 수준 및 그 격차</u>

현행	개정안
제45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설></u> 2. ~ 7. (생략) ④ ~ ⑧ (생략)	<u>4.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대한 의존도</u> <u>5.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한 전자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화등의 수량 및 특성</u> <u>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제45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u>1의3. 제21조의4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u> 2. ~ 7.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이 전체 유통업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중개거래 서비스의 규모도 이에 따라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중개거래에 관한 규제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음.

- 특히 각 거래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와 유사한 형태로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사이에서도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보임.
- 개정안의 내용은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법률에 규율한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2]⁸⁾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개정안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내용>

구분	내용	비고
구입강제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재화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부당한 손해전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불이익 제공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경영활동 간섭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배열순위 조작을 통한 차별취급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검색·배열 순위를 조작 또는 변경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결제방식 강제를 통한 차별 취급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특정한 결제방식 사용 여부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계약하지 아니하고 판매촉진 행사에 사용되는 비용 등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강제로 부담시키는 행위	
배타적거래 강요	부당하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다른 통신판매중개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 다만, 개정안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내용은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사이의 거래 관계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현행법이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B2C)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어⁹⁾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 소비자 권익의 보호,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규율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들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¹⁰⁾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가 사업자-소비자간 거래(B2C)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있고, 사업자간(B2B) 거래상지위남용행위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규율 가능하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9)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1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오기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371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945호)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432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594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709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983호)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817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346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514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김남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777호)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794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802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한창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188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 (윤종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738호)

문 의 처
02)6788-5114